

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발급 교육수료증명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수료증명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및 삭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에서 교육수료증명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내 교육수료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 삭제(안 별표 5호제2호아목)

나.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 수료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  
년월일로 대체하고 주소 기재란 삭제(안 별지 제2호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이 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(국  
토교통부 고시)」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  
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항공안전정책과)로 2022년 10  
월 20일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

(☎ 044-201-4257, 팩스 044-201-5628)

※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
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(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